

## 미국장로교회 성적비행 정책 및 절차

### PRESBYTERIAN CHURCH (U.S.A.) SEXUAL MISCONDUCT POLICY AND ITS PROCEDURES

#### I. 정책 성명서 Policy Statement

미국장로교 PC(USA)의 교단 정책으로서 모든 교회 교인들, 임원들, 교인이 아닌 고용인들, 회중의 자원봉사자들, 치리회, 및 교회의 본체는 언제든지 목회, 고용, 그리고 직업적인 관계에서 청렴함을 유지한다. 성적비행에 관련된 자는 성서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요, 또한 목회, 고용, 그리고 직업적인 관계를 위반한 것이다. 교회 교인, 임원, 직원, 혹은 자원 봉사자의 성적비행을 절대 용인 혹은 용납할 수 없다.

#### *분포 Distribution*

본 정책과 절차들은 문서로서 모든 치리회와 관련 기관에 제공되어야 한다. 이는 교회, 중간 공의회, 그리고 관련 기관의 안내서로 의도되었으며 만약 제대로 이행된다면 교회 교인, 임원, 직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는 미국장로교 총회 정책으로서 선교국과 사무국의 직원들을 다스리고 보호하는 일이다. 이 정책과 절차들은 성적비행의 피해자 혹은 피해자라고 자처하는 자와 그 가족을 포함하여 타인의 비행을 고소하는 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미국장로교회의 다른 치리회들도 성적비행과 관련된 자체적인 정책과 절차들을 만들어가는 안내서로 이 정책을 사용할 수 있다.

#### II. 행동의 기준 Standards of Conduct

...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동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 여러분은 하나님이 맡겨 주신 양떼를 잘 돌보십시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단순히 봉급을 받을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되며 진심으로 양떼를 보살펴야 합니다

맡겨진 양떼를 지배하려 들지 말고

그들의 모범이 되십시오.

... 여러분도 다 아는 일이지만 선생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벧전1:15; 5:2-3; 약3:1, 현대인의 성경 KLB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모든 자들의 윤리적 행동은 교회에 치명적으로 중요하다. 그 이유는 이 대표들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하여

지기 때문이다. “이들의 생활 방식은 교회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한다.” (*Book of Order*, G-2.0104a).

이 정책을 안내하는 행위의 기본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성적비행이란 믿는 관계에서 청렴, 예민함, 그리고 돌봄을 행사하도록 요청 받은 목사, 고용인, 자원봉사자, 상담자, 감독자, 교사, 그리고 모든 자문 인들의 역할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이것은 교구민, 의뢰인, 공동 작업자, 그리고 학생들의 최선의 이익을 저버리는 행위이다.
2. 성적비행은 권위와 권력의 잘못된 사용으로서 개인의 쾌락을 위하여 남용, 착취, 그리고 부당한 방법으로 신뢰의 관계를 오용하여 상대방부터의 이점을 얻는 기독교 윤리 원칙을 위반하는 일이다. 만약 교구민, 학생, 의뢰인, 혹은 고용인이 어떠한 관계에서 먼저 성적요구를 비친다면 이것은 목사, 상담자, 임원, 혹은 감독자가 지켜야 할 책임으로서 적절한 역할을 유지하며 그들과의 성적관계를 금하여야 한다.
3. 성적비행은 아동을 포함하여 그들 자신의 복지를 이행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의 취약성을 이점으로 삼는 것이다. 이는 깨어진 세상을 온전하게 치유하고자 사역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에 대조되는 일이다. 위험에 처한 약한 자를 보호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위반하는 것이다.

### 정의 Definitions

*성적비행 Sexual Misconduct* 은 본 정책에서 거론되는 포괄적인 용어로서 다음을 포함한다:

아동 성적 학대 *Child sexual abuse*;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사항으로, 성인 혹은 제삼자의 성적 자극을 위하여 아동이 사용 될 때 갖는 성인과 아동간의 모든 접촉 및 상호 작용을 말한다. 이러한 행동은 실제적인 접촉이 있거나 혹은 없을 수도 있다. 어린이와 어른간의 성적 행동은 어린이의 동의와 상관없이 언제나 강요된 것임을 고려한다. 미국장로교회에서는 아동 성적 학대의 정의는 모든 18 세 미만 미성년자를 뜻한다.

성적 학대 *Sexual abuse* 는 *규례서*에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다른 사람의 성희롱은 다른 사람에 관련된 성적행위를 포함하는 범법이다. (1)18 세 이하나 동의할 정신적 능력이 없는 18 세 이상의 어느 개인; 또는 (2)그 행위가 강제, 위협, 협박, 또는 직제사역이나 직위의 남용을 포함할 때의 어느 개인” (*규례서*, D-10.0401c).

성희롱 *Sexual harassment*; 본 정책에서 이렇게 정의한다: 반갑지 않은 성적 전진, 성적 호의의 요구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성희롱이 성립되는 언어 혹은 물리적 행위의 성적 충동들

- a. 일자리 제공 혹은 기관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조건을 암시적 혹은 드러나게 표현하며 위의 행동들에 복종하게 함
- b. 위의 사항들을 복종 혹은 거절한 대가로 당사자와 관련된 고용계약에 영향을 줌
- c. 위의 사항들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협박, 적의, 공격적인 작업환경을 만들어 당사자의 업무수행을 방해함; 혹은
- d. 반갑지 않은 성적 농담, 반갑지 않은 혹은 부적절한 접촉, 아니면 모욕을 주는 성적시각의 과시, 타락, 그리고/혹은 성적으로 악용된 남자, 여자, 혹은 아동.

강간 *Rape* 혹은 힘, 협박, 아니면 위협의 성적 접촉

성적 행위 *Sexual conduct* (공격, 강박관념에 사로잡힘, 혹은 암시적인 언어나 행동, 부적절한 시각적 접촉, 반갑지 않은 접촉 혹은 귀여워함 등) 타인의 감정 혹은 신체적 건강에 유해한 행위

성적 부정행위 *Sexual Malfeasance*; 직업 성직자의 관계에서 위치 혹은 역할을 오용하여 생긴 성적 행동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신뢰성을 말한다.

과학기술의 오용 *Misuse of technology*; 타인을 학대하거나 성희롱으로 사용된 과학기술, 성직자와의 관계에 있는 자에게 보내는 암시된 메시지 혹은 이미지의 문자 혹은 이메일을 말한다. 교회소유지 내에서 포르노를 보는 것은 절대로 적절하지 않다. 만약 18세 미만이 관련된다면 이것은 아동학대에 속한다. 목회의 상황, 혹은 교회가 소유한 과학기술을 사용할 때 개인 정보를 존중함은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

### III. 성적비행 주장에 대한 교회의 반응 Church Response to Allegations of Sexual Misconduct

#### A. 원칙 *Principles*

성적비행 혐의에 대한 반응으로 교회 교인, 임원, 그리고 직원들은 치유를 추구하며 모든 사람들의 보호를 보장하여야 한다. 가능하다면, 당사자들의 개인 정보 보호가 존중되며 통신의 비밀이 유지되어야 한다.

성적비행 혐의에 대한 반응으로 교회 교인, 임원, 그리고 직원들은 관련된 당사자들의 위엄을 세워주고, 성적비행의 가해자로 의심받는 자를 포함하여, 양쪽 공동체와 가족들을 돌본다.

미국장로교회는 교인, 임원,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관할을 책임지고 만약 교인, 임원, 혹은

직원이 성서 혹은 미국장로교 헌법에 반대되는 공격을 취하였다는 혐의가 있을 시 교회는 혐의를 파헤칠 사명이 있다. 그리고 만약 혐의가 사실이라면, 교인, 임원, 직원의 행동을 수정하고 공동체 일원의 안전을 확인한다. 성적비행에 대한 혐의는 언제나 항상 성서와 교단 헌법을 위반하는 혐의로 다루어 지며 *규례서*에 명시된 미국장로교 징계절차로 연계된다. 당사자가 활동 비교인으로서 교회에 고용된 자 혹은 자원봉사자의 경우는 치리 기관의 직원정책 문서로 대체한다.

만약 성적비행으로 고발당한 자가 더 이상 미국장로교회의 교인, 임원, 혹은 직원이 아니고, 비행이 그가 미국장로교회를 대표할 동안 이루어졌다면 교회는 그 행동을 바로 잡을 관할권이 없다. 그러나 범법에 대한 혐의를 조사할 의무가 있고 다시는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치리 기관은 행정위원회를 임명하여 성적비행의 혐의를 조사할 수 있다. 치리 기관은 교육과 정책을 통하여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B. 신고 필수사항 *Reporting Requirements*

### 1. 성적비행 신고하기 *Reporting Sexual Misconduct*

누군가 미국장로교 교인, 임원, 직원, 혹은 자원봉사자의 성적비행을 신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면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미국장로교 목사 혹은 장로로부터 안내를 받도록 장려한다.

회중 *Congregation*: 만약 성적비행의 가해자가 교인, 장로, 집사, 자원봉사자, 혹은 회중의 직원이라면 혐의에 대한 신고는 목사, 당회 서기, 혹은 인사위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만약 가해자가 교회의 임원이라면, 교회는 *규례서*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사용한다. 만약 가해자가 교인이 아닌 직원 혹은 자원봉사자라면, 교회는 당회가 정한 절차를 사용한다.

노회 *Presbytery*: 만약 성적비행의 혐의 가해자가 목사라면, 신고는 노회 서기에게 하여야 한다. 만약 혐의 신고가 문서로 되었다면, 노회는 *규례서*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사용한다. 만약 성적비행의 가해자가 노회의 자원봉사자 혹은 비회원 직원이라면, 신고는 어느 직원이거나 아무 자원봉사자에게 할 수 있다. 노회는 노회의 내규 혹은 정책 절차를 사용할 것이다.

상위 치리 기관 혹은 총회기관 *Higher Governing Body or Entity of the General Assembly*: 만약 성적비행의 가해자가 상위 치리 기관의 고용인 혹은 자원 봉사자이면 치리 기관 혹은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담당자에게 직접 보고한다. 혐의에 대한 신고는 감독관의 능력을 갖고 있는 어느 누구에게나 보고될 수 있다. 기관은 내규 혹은 규정된 절차를 사용하여 반응한다.

### 2. 성적비행 접수 받기 *Receiving Reports of Sexual Misconduct*

성적비행 혐의신고는 여러 방법으로 일어난다.

치리기관으로서는 성적비행 피해자가 누구에게 먼저 이야기 할지 알 수 없기에 임원, 직원, 그리고 교회 리더에게 신고가 들어오면 담당자에게 어떤 채널로 전하여지는지 알려야 한다. 혐의를 보고하는 자는 미국장로교회와 공식적 관련이 있을 수도 혹은 없을 수도 있고, 아울러 미국장로교회의 여러 임원 혹은 리더로서 섬긴 자일 수도 있다. 모든 성적비행의 혐의보고는 적절하게 처리하며 아동학대의 경우 필수 신고 사항을 잊지 않는 것이 책임을 맡은 사람들의 임무이다.

성적비행 혐의신고는 절대로 가볍게 다루거나 혹은 무시하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 가해자, 그리고 교회의 명성과 고결성에 흠이 가는 소문으로 퍼지지 않아야 한다. 혐의신고는 높은 수준의 기밀 유지로 다루어지며 다음과 같이 담당자에게 보고되기 전과 후 언제나 해당된다.

첫 번째로 성적비행을 알게 된 자는 목회상담 혹은 치유과정에서 누설된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자 혹은 가해자에게 혼자서 어떤 문의나 질문도 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피해자가 “더 높은 기관”에 알리기를 꺼린다면 처음 신고를 받은 자는 특별한 목회적 책임을 갖고 신뢰를 구축하고 가해자와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며, 아무도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여 교회가 손을 쓸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성적비행의 혐의신고를 처음 접한 자는 사건의 가해자와 미국장로교회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가해자의 치리기관에 혐의신고를 정식으로 제출함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이것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 혹은 미국장로교회의 어느 멤버도 할 수 있는 일이다.

만약 신고를 구두로 하였다면, 혐의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를 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작성하여줄 것을 요구하여야만 한다. 미국장로교회 멤버가 서면으로 제출한 미국장로교회 멤버 혹은 임원의 성적비행 혐의신고는 규례서의 권징조례를 따라서 처리되어야 한다. 만약 미국장로교 교인이 아닌 자가 서면으로 미국장로교의 멤버 혹은 임원의 성적비행을 당회 혹은 노회서기에게 고발하면, 마찬가지로 규례서의 권징조례를 따라서 처리되어야 한다. 만약 신고하는 자가 서면으로 하기를 원치 않던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미국장로교회의 어떤 관계자도 서면 신고를 할 수 있고 이는 자동으로 규례서의 권징조례를 따라 처리하게 된다.

### 3. 아동학대 필수신고 *Mandatory Reporting of Child Abuse*

모든 사역장로, 집사, 인증된 기독교교육자, 그리고 교역장로(목사)들은 규례서에 의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정보를 민간기관과 교회기관에 알려야 함을 필수로 하고 있다. 규례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있다:

“본 교단에서 직제사역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회원과 본 교단과 개체교회에서 종사하고 있는 모든 유자격 기독교 교육사들은, 미성년자나 정신능력이 박약한 성인에 대한 신체 학대,

유기, 또는 성적 희롱이나 학대의 위험을 알고 있을 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교회 당국과 민간 사법당국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1) 이러한 정보를 G-4.0301에 명시된 비밀보장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방법으로 입수했을 때, 2) 보고해야 할 사람이 법에 따라 비밀 보장 커뮤니케이션 의무에 묶여 있지 않을 때, 또는 3) 보고해야 할 사람이 판단하기를 장차 신체적 위해나 학대의 위험이 있다고 믿을 때이다.” (G-4.0302)

추가로

“목회적 돌봄을 이행하면서 교역장로들(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들로 칭하기도 함)과 제한된 목회사역에 위임된 평신도 목회자들은 (G-2.10) 신뢰와 비밀보장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그러한 돌봄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정보, 그리고 그러한 돌봄에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해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자신의 비밀이야기를 한 사람이 그 비밀을 공개해도 좋다고 명백하게 승낙을 하였으면, 교역장로(목사)나 평신도 목회자는 그 비밀을 공개할 수도 있으나 꼭 공개할 필요는 없다. 교역장로(목사)나 목회로 위임 받은 목사 혹은 장로는 강요할 수는 없지만 비밀정보를 밝힐 수 있다. 교역장로(목사)나 평신도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 신체적으로 해를 받을 가능성이 시급하다고 판단이 설 때에는 비밀정보라도 공개할 수 있다.” (G-4.0301)

이 정책에 해당되는 모든 자들은 아동학대를 인지하면 고용기관, 감독관, 혹은 치리회 대표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추가적인 책임이 있다. 모든 사람들은 아동 성적학대 혐의나 실제사건에 대한 주정부와 지역 법에 대한 정보를 알고 따라야 한다. 이러한 보고는 정보를 입수한 후 합리적인 시간 안에 처리되어야 한다.

규례서의 이러한 규정들은 미국장로교회 임원들의 대립되는 도덕적 의무에 균형을 이루려는 시도이다.

말씀과 성례전 목사들에게 이 규정은 어린이들에게 있을 수 있는 해를 방지하는 의무와 규례서 G-6.0204에 정의된 모든 사역의 목회적 돌봄을 이행하며 그들에게 밝혀진 모든 비밀정보를 보장하는 의무의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기 위한 것이다.

장로, 집사, 그리고 인증된 기독교교육자에게 이 규정들은 교회임원으로서 어린이를 해에서 보호하는 의무와 변호사/고객, 상담자/고객, 혹은 의사/환자 등의 세속적 관계에서 밝혀진 정보들의 비밀보장 의무의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기 위한 것이다. 세속적 의무는 세상 법의 기능으로서 이는 주정부마다 다를 수 있다.

### C. 답변 *Responding*

해당되는 치리회 혹은 기관의 답변은 성적비행 혐의 가해자의 미국장로교회와의 관계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교회 교인들과 임원들은 규례서에 의하여 문의와 징계(비난과 교정)의 대상이 된다. 비교인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은 그들을 고용한 치리회 혹은 기관에 의한 감시와 교정의 대상이 된다.

#### 1. 규례서에 해당되는 피소인 *Accused Covered by Book of Order*

성적비행 혐의가 당회서기 혹은 노회서기에게 접수되면 치리회의 서기는 치리회에 신고사항을 알리며 규례서 권징조례의 순서에 따라 치리회는 절차를 밟아간다. 치리회는 조사위원회를 임명하여 혐의에 대한 문의를 시도한다. 조사위원회는 신속하게 혐의에 대한 문의를 시작한다. 늦어짐은 피해자 그리고/혹은 가해자에게 추가의 해를 가져올 수 있다.

치리회와 기관은 아동 성적학대 혹은 다른 범죄의 성적비리를 조사할 때 민사기관과 반듯이 협력한다. 교회의 권징 절차는 민사기관의 범죄조사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되고 모든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정지할 수도 있다.

당회는 속한 교회만의 교인, 장로, 집사를 권징 함에 원래 관할권이 있다.

노회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를 권징 함에 원래 관할권이 있다. 노회는 “말씀에 따라...단호히 요구”(G-2.0904)한다면 목회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 학대로 신고된 목사에게 규례서의 절차를 따르며 위험평가를 정할 때에 노회는 목사에게 오직 직위정지 처분만 내릴 수도 있다 (D-10.0106). 상임사법전권위원회(PJC)가 진술 및 청문회를 바탕으로 위험평가를 진행할 때에 민간법률 자문을 고려하기를 권장한다.

교회 임원이 관할권을 파기할 때에, 당회 혹은 노회 서기는 다음 치리회 미팅에서 파기된 내용을 보고하며 치리회 회의록에 기록한다. 보류된 사건들의 상황은 이 시간에 치리회와 나눌 수 있다.

#### 2. 규례서에 해당되지 않는 피소인 *Accused Not Covered by Book of Order*

총회 치리회 혹은 기관이 성적비행의 피소인으로 비회원 고용인 혹은 자원봉사자를 접수 받았을 때에 치리회 반응의 절차는 치리회 및 기관이 서면으로 작성한 인사정책을 따른다. 이러한 문의를 대비하여 치리회 혹은 기관은 인사위원회를 둘 것이다. 만약 인사위원회가 없다면, 혐의를 조사하기 위하여 위원회 혹은 행정전권위원회를 임명한다.

위원회 혹은 전권위원회는 성적비행 범법혐의를 다음과 같이 조사한다:

- a. 피소인에 대한 혐의가 성적비행의 합리적인 의혹인지 판단한다.
- b. 만약 그렇다면, 이러한 행위를 교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한다.

c. 이러한 상황에서 제한된 사역, 직위정지, 혹은 관계해소 등을 포함하여 필요한 치유방법들을 결정한다. 만약 피소인이 다른 교단의 멤버라면 그 교단에 협의와 결과를 알린다.

d. 피해자와 피소인에게 치유의 방법을 알린다.

e. 모든 사건에 인사위원회는 서면보고서를 준비하며 이는 피소인에 대한 영구적인 인사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피소인은 이러한 영구적인 문서에 영구적인 본인 성명서를 첨가 함을 허락하여야 한다.

모든 절차는 치리회, 고용기관, 혹은 총회 기관이 정한 안내서를 따른다.

### 3. 치리회 혹은 기관 서류기록 *Governing Body or Entity Record Keeping*

치리회 혹은 기관은 심사 숙고하여 내린 결정과 회의록 그리고 고소인, 피소인, 및 관계자들과의 대화내용, 그리고 위원회와 정권위원회로부터 받은 보고서 등의 자세한 내용을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서들은 가능한 비밀보장을 유지한다. 사건 #208-6에서 총회 행정전권위원회 (GAPJC)는 권징조례를 해석하기를 치리회 혹은 기관은 필요에 따라 서로 다른 미국장로교 치리회 혹은 기관에서 문의하는 기록내용을 보여줄 수 있다고 정하였다. 문의가 진행되는 동안 서류들은 치리회의 서기 혹은 책임자가 보관한다.

## IV. 예방 및 위기관리 *Prevention and Risk Management*

### A. 이행 *Implementation*

총회는 모든 치리회와 대학, 종합대학, 그리고 신학교를 포함한 관계된 기관들에게 고용인들의 사무직에서 성적비행의 범법행위를 규정짓거나 고발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절차를 세우도록 추진한다. 치리회와 기관들은 적당한 단계를 설정하여 성적비행의 신고가 있을 시 멤버, 고용인, 자원봉사자, 그리고 학생들이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절차와 행동의 기준을 나누도록 강력하게 장려한다.

### B. 책임 및 보험 *Liability and Insurance*

법적 논리에 의하면 치리회 혹은 기관은 임원, 목사, 혹은 고용인의 성적비행으로 인한 피해를 책임지어야 한다. 치리회와 기관은 이러한 가능성 있는 책임을 고려하여 채용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치리회와 기관들은 책임보험 사업자에게 임원, 고용인,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운영 혹은



후원하는 활동과 프로그램들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보통 표준 보험제도는 캠핑, 데이케어 운영, 대피소, 혹은 다른 봉사활동 프로그램등과 같은 구체적인 공개된 사역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있다.

또한 치리회와 기관들은 성적학대와 성폭행을 대비한 구체적인 책임보험 정책을 통용할 것을 권한다. 이러한 보상은 치리회와 기관, 임원, 책임자, 혹은 고용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민사 소송의 법적 방어 비용을 제공할 수 있다.

### C. 고용 관행 *Employment Practices*

#### 1. 기록 보관 *Record Keeping*

정확한 기록보관은 교회, 중간 공의회, 그리고 관계된 기관들의 채용과 감독 업무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각 치리회와 기관은 목사를 포함한 모든 고용인의 인사 관련 서류철을 간직하여야 한다. 서류철은 다른 서류철에 따로 보관하도록 법으로 요구 된 기록들을 제외하고 지원서류, 고용 설문, 배경조사, 추천서, 그리고 고용인의 채용과 관련된 모든 서류들을 담고 있다.

#### 2. 지원자 사전 선별 *Prescreening Applicants*

치리회와 기관들은 체계적이며 일관된 채용 업무를 확립하여야 한다. 만약 지원자가 고용주에게 생소한 사람이라면 고용주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확인한다. 치리회는 특별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을 하는 모든 지원자에게 범죄사실이 있는지 전국적인 조사를 포함한 배경조사를 진행한다.

직원 채용 전에 사전 선별하는 과정에는 성적비행의 과거 사례가 있는지 구체적인 질문으로 조사함을 포함하고 있다. 부록 B: 샘플 증거서류 E 를 보라.

#### 3. 참고인 조회 *References*

채용하는 치리회 혹은 기관은 미래 목회자, 고용인, 혹은 자원봉사자의 참고인에게 연락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대화를 기록한 내용, 혹은 참고인과 주고 받은 문서들을 목사 혹은 고용인의 인사 서류철에 보관한다. (참고인 샘플 형식으로 부록 B: 샘플 증거서류 B 를 보라)

다른 곳에서 이전하는 목사들을 대할 때 치리회는 그 책임을 이전 목회지의 대회 총무, 노회 총무, 혹은 목회위원회 아니면 목회후보자 위원회에 조회할 수 있다.

치리회나 기관에서 참고인으로 허락 받은 자는 지원자의 성적비행에 관한 의혹, 문의,

그리고 행정적 직위정지 혹은 징계를 정직한 정보로 전달할 의무가 있다.

만약 거짓이나 잘못된 정보가 지원자로부터 전달되었거나, 혹은 관계된 정보가 생략되었다면, 지원자는 고려 대상에서 탈락되어야 한다.

지원자의 성적비행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은 지원자에게 전달되어 참고인으로부터 전하여진 유해한 정보를 교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물을 제시하거나 추가 참고인을 구하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 V. 교육 및 훈련-인식 Educating and Training—Awareness

성적비행의 이슈는 현실로 다가왔기에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교육하고 훈련할 필요사항으로 새롭게 떠오른다. 이처럼 구체적인 교육을 받아야 대상은 다음과 같다: 목사, 자원봉사자, 임원, 전문 그리고 비전문 직원, 목사 후보생, 교단 내에서 이 일을 다루게 될 전문인, 교회 교인, 그리고 감독자, 고용인, 서기를 포함한 치리회 직원들이다.

이 모든 사람들과 그룹을 교육함은 그룹마다 다를 수 있다.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일차적 요구사항은 전문적 및 목회적 경계선에 대한 일반적 이해, 총회 성적비행 정책, 그리고 그들 자신의 치리회 혹은 기관의 정책들이다.

신학기관들은 목회적 권위의 바른 사용을 포함한 성윤리, 성적비행에 대한 총회 정책, 그리고 다른 자료들을 그들의 현존하는 교과과정에 포함하여야 한다.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노회가 후보 목회자, 새로 안수 받은 목사들, 노회에 부임한 신임 목사들을 포함하는 적절한 위원회가 이들을 성적비행에 대하여 교육하고 훈련하며, 이 때 특별히 노회의 구체적인 정책과 절차를 가르친다.

회중교육의 많은 부분이 성적비행의 실제상황에 대한 반응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권하는 것은 회중이 이 일에 대하여 가능한 여러 상황을 염두에 두고 교육을 제공하는 일이다. 회중의 상황에 맞는 많은 자료들이 이미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고용기관들은 모든 고용인들이 그들의 정책과 절차에 대하여 잘 알고, 이해하며, 준수할 것을 확인함이 필요하다. 고용기관들은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훈련과 자료들을 제공하여야 한다: 직원 미팅에서의 워크숍, 점심시간 토의그룹, 사용할 수 있는 기사 및 책자 등.

만약에 치리회가 의뢰한 모든 직업인(치료사, 변호사, 후원자, 중재자, 전권중재인)들이 성적비행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면 이 분야에 자격 있는 전문가에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부록 Appendix A

### 정의 Definitions

*피소인 Accused* 이란 성적비행 혐의로 고발된 자를 가리킨다.

*고소인 Accuser* 은 본 정책을 위반한 어떤 사람의 성적비행을 알고 있는 자를 가리킨다. 고소인은 성적비행 혐의의 피해자 혹은 피해자가 아닐 수도 있다. 피해자의 가족, 친구, 혹은 동료가 고소인이 될 수 있다.

*교회 Church* 는 대문자로 시작될 때 미국장로교회를 가리키며 첫 글자가 소문자로 시작되면 지역교회를 말한다. 회중이란 단어는 대충 교인들과 참여자들을 가리킴에 사용된다.

*고용인 Employee* 은 포괄적인 단어로써 미국장로교회에서 유급을 받으며 일하도록 채용된 개인을 말한다.

*기관 Entity* 은 이사회, 위원회, 카운슬, 혹은 치리회가 선출한 위원들로 구성된 조직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혹은 사무처를 가리킨다.

*치리회 Governing Body* 는 말씀과 성례전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된 대표성의 지체이다: 당회, 노회, 대회, 그리고 총회가 있다. 치리회는 기관으로서 데이 케어 센터, 컨퍼런스 센터, 캠프, 혹은 양로원 등을 세울 수 있다. 치리회는 교회 교인과 비교인 둘 다 고용인으로 둘 수 있다.

*예비절차 Inquiry* 는 권징조례에서 사용하는 명칭으로 치리회가 받은 범법혐의에 대하여 고발사건으로 접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단계이다. 규례서 D-10.0000을 보라.

*필수 신고 Mandated Reporter* 는 어떤 주정부 법률에서 정의하길 아동 성폭력을 비롯하여 아동 학대에 관하여 입수한 모든 정보는 필수로 신고해야 함을 말한다. 필수신고에 대한 주 법에서의 "정보를 아는 모든 사람"에 대한 정의가 조금씩 다 다른데 매우 제한된 목록의 직업인들만이 필수로 신고하도록 되어있기도 하다.

*해당된 자 Persons Covered* 정책에 해당됨은 미국장로교회 총회의 교회교인, 교회임원, 목사, 그리고 비교인으로서의 고용인 혹은 자원봉사자들을 포함한다. 총회 외의 모든 다른 치리회 혹은 기관들은 본 정책의 안내를 받아 각자의 성적비행 정책을 만들 것을 주장한다.

*답변 Response* 는 성적비행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치리회 혹은 기관이 취하는 행동이다.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은 (1) 사실과 상황에 대한 문의, (2) 가능한 징계 (행정 혹은 사법 혹은 양자 모두), (3) 피해자와 그의 가족 및 타인을 위한 목회적 돌봄, 그리고 (4) 피소인과 그의 가족을 위한 목회적 돌봄과 복직 등이다.

*세속 당국 Secular Authorities* 이란 정부기관으로서 시, 카운티, 주, 혹은 연방으로 성범죄 혹은 성인 및 아동을 성폭력 한 혐의로 기소된 자에게 취조, 형사 기소, 그리고/혹은 민사 소송의 책임이 있다.

*세속 법 Secular Law* 은 시, 주, 연방법으로서 흔히 민사와 형사법을 함께 포함하여 가리킨다. 이 정책이 금하는 행동은 형사 및/혹은 민사 소송의 세속 법으로 기소될 수 있다.

*피해자 Victim* 는 본 정책에 해당된 자에 의하여 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말한다.

*자원봉사자 Volunteer* 는 미국장로교 총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자원봉사자는 이사회, 위원회, 그리고 다른 그룹에 선출되거나 임명된 자를 포함한다. 이 정책의 목적으로 자원봉사자는 고용인들과 동등하게 취급된다.

## 부록 Appendix B

### 고용 절차 - 양식 Employment Procedures—With Forms

각 “고용기관”은 직원을 뽑는 광고, 선택, 그리고 청빙의 채용절차를 포함한 기관의 인사정책을 이미 책정하고 시행 중이어야 한다. 고용절차는 행정대표 임원 및 다른 직원 선출, 면제 혹은 비 면제 직원 임명, 말씀과 성례전 목사의 청빙, 주요한 행정임원들, 그리고 선출된 직원들에 대한 고용과정을 설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고용절차는 또한 임용 전에 지원자에 대한 조회를 포함하여야 한다. 고용기관의 인사정책은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 정기적인 실적검토 과정, 그리고 성적비행(성희롱 포함) 예방을 위한 섹션 등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들은 모든 전임, 파트, 임시, 그리고 인테림 직원에게 해당된다. 인사정책은 또한 보복의 두려움 없이 직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우려를 표현할 수 있도록 비밀유지에 대한 의사소통의 채널이 마련되어야 한다.

공석 자리를 채우기 위한 채용기관의 청빙절차로 총회 기관과 관계 지체에 요구되는 사항의 한 부분은 전체교회와 공공에 알리는 광고이다. 그리고 전체교회적 평등고용과 차별 철폐조치를 치리회의 안내사항으로 권하는 바이다. 성적비행에 대한 본 정책과 절차를 지원한다면 광고 인쇄, 교회에 분포, 그리고 각 지역 교회 광고란에 실린 모든 종교 지도자 공석의 자리를 찾는 문구에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첨가하여야 한다:

“미국 장로교회는 평등고용주이다. 추가로, 교회는 성희롱 혹은 학대에 반하는 강한 정책이 있다. 채용과정에서 철저하게 기록을 조회할 것이다.”

이 성명은 직업 사무처(Office of Vocation)의 인사조회 서비스를 통하여 발송하는 모든 정보에 첨가될 것이다.

다음의 양식들은 부록으로 첨가된다: 증거서류A, 고용 설문; 증거서류B, 고용인 기밀조회. 이 두 개의 양식은 총회 관련 기관들이 사용할 것이고 교회의 다른 고용기관들의 사용으로 추천한다. 증거서류 C는 성적비행 정책을 구현하는 양식으로서 각 고용 기관에서 성적비행 정책을 고용인들과 타인에게 분포할 때 사용된다. 증거서류 D는 성적비행 의혹신고서로 기관 내에서 일어난 성적비행을 다루는 담당자 혹은 그룹이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함에 사용된다.

적절한 인사 진행에 요구되는 사항으로 교회 고용기관의 각 고용인들에게 직원용 핸드북이 작성, 출판, 분포되어야 한다. 모든 현존하는 인사정책과 직원용 핸드북은 성적비행 정책을 첨가하여 업데이트 되어야 한다.

다른 치리회, 관계 지체, 그리고 기관들은 본 총회 정책이 안내하는 내용들을 사용하여 각자의

정책과 절차를 발전시키고 출판작업을 하며 법률자문을 구할 것을 권한다.

모든 양식은 주정부 법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체크한다.

샘플 증거서류 및 구현을 위한 양식  
Sample Exhibits and Forms for Implementation

샘플 증거서류 Sample Exhibit A

본 샘플은 고용 설문자료이다. 고용설문에서 흔히 보는 보통질문에 추가하여 본 집필 팀은  
인증 및 공개된 지난 성적비행 사고들에 집중하였다. 모든 기관들은 본 양식 및 직접 작성한  
대용 양식을 사용하기 이전에 각 지역 법률자문과 검토할 것을 주장한다.

샘플 고용 설문 Sample Employment Questionnaire

이름 Name: \_\_\_\_\_

Last

First

Middle

주소 Address: \_\_\_\_\_

Street

City

State

Zip

직장 전화 Business Phone: \_\_\_\_\_ 휴대폰 Mobile Phone: \_\_\_\_\_

다른 이름을 사용한 적이 있는가? Have you ever been known by any other name? Yes\_\_\_ No\_\_\_

예라면, 이름을 적으시오 If yes, please provide other name(s): \_\_\_\_\_

고용 기록 Employment Record (현재 및 지난 5년 동안의 고용관계를 기록하시오)

고용인 Employed by: \_\_\_\_\_

주소 Address: \_\_\_\_\_

시, 주, 우편번호 City, State, Zip: \_\_\_\_\_

감독관 이름 Supervisor \_\_\_\_\_ 전화 Phone: \_\_\_\_\_

감독관 지위 Supervisor's Title: \_\_\_\_\_

고용 날짜 Employed from \_\_\_\_\_ (month/year) to \_\_\_\_\_ (month/year)

사임 이유 Why did you leave? \_\_\_\_\_

Employed by: \_\_\_\_\_

Address: \_\_\_\_\_

City, State, Zip: \_\_\_\_\_

Supervisor: Phone: \_\_\_\_\_

Supervisor's Title: \_\_\_\_\_

Employed from \_\_\_\_\_ (month/year) to \_\_\_\_\_ (month/year)

Why did you leave? \_\_\_\_\_

Employed by: \_\_\_\_\_

Address: \_\_\_\_\_

City, State, Zip: \_\_\_\_\_

Supervisor: Phone: \_\_\_\_\_

Supervisor's Title: \_\_\_\_\_

Employed from \_\_\_\_\_ (month/year) to \_\_\_\_\_ (month/year)

Why did you leave? \_\_\_\_\_

나는 (a) 사법, 형법, 혹은 교회법으로 성적비행 고소가 지속된 일 혹은 진행중인 것이 없음을  
인증함; (b) 성적비행과 관련된 이유로 자리에서 사임 혹은 해소 된 적이 절대 없음을 인증함.

I certify that (a) no civil, criminal, ecclesiastical complaint has ever been sustained or is pending  
against me for sexual misconduct; (b) I have never resigned or been terminated from a position for  
reasons related to sexual misconduct.

---

사인Signature

날짜 Date

주Note: 만약 위의 인증을 할 수 없다면 대신하여 제공된 지면에 고소의 내용, 해소, 혹은 상황의  
결론 그리고 추가하고 싶은 설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If you are unable to make the above  
certification you may instead give in the space provided a description of the complaint, termination, or the  
outcome of the situation and any explanatory comments you care to add.



## 기권증서 Release

본 설문에 실린 정보는 나의 지식으로 정확한 내용이고 고용기관에 의하여 조회할 수 있다. 본인은 (고용 기관 이름)이 나의 전 고용기록, 피고인으로서의 형사 및 민사기록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접촉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부여한다. 이 기권증서를 통하여 나는 어떤 이전 고용주와 어떤 법 집행 기관 혹은 사법당국이 요청에 의하여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고용기관 이름)\_\_\_\_\_에 공개 할 것을 정식으로 허가한다.

나는 이 기권증서를 읽고 온전히 이해하기를 획득된 정보는 고용 기관이 본인의 채용 혹은 다른 근무처의 자리를 거부하는데 사용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나는 또한 합법의 기권증서 혹은 어떤 정보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요구, 책임, 그리고 행동의 원인에 고용기관 혹은 사법당국에 해를 취하지 않을 것을 동의한다.

사인 Signature \_\_\_\_\_

증인 Witness \_\_\_\_\_

증인 Witness \_\_\_\_\_

샘플 증거서류 Sample Exhibit B

본 샘플 양식은 모든 면담 혹은 전화 조회를 기록함에 사용될 수 있다. 성적비행 혹은 아동폭력에 대한 추가사항으로 고용기관이 채용 전에 합리적이고 조심스러운 심사과정이 있었음을 제시하며 법정에 제출할 수 있는 증거물을 남기는 것이다.

고용 비밀조회 Confidential Employment Reference

1. 지원자 이름 Name of applicant: \_\_\_\_\_

2. 접촉한 참고인 혹은 교회 (만약 교회라면, 교회와 접촉한 사람을 모두 확인한다):

\_\_\_\_\_  
\_\_\_\_\_

3. 접촉한 날짜와 시간: \_\_\_\_\_

4. 참고인 혹은 교회를 접촉한 조회자: \_\_\_\_\_

5. 접촉방법 (전화, 편지, 개인대화): \_\_\_\_\_

6. 대화 요약 (포지션에 대한 지원자의 적합성과 적당성에 대한 참고인의 평, 성적비행에 대한 유죄판결 혹은 대기중인 판결, 성폭력 혹은 아동학대 등에 대한 요약):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Name

Title

\_\_\_\_\_  
Signature

Date

샘플 증거서류 Sample Exhibit C

본 샘플은 성적비행 정책을 활성화 하기 위한 도구로 제작되었다. 모든 고용인들은 성적비행 정책을 받았음을 확인함이 필요하다. 이 정책은 고용주를 보호하며 권한을 부여하여 준다.

성적비행 정책 구현양식 확인영수증:

본인은 \_\_\_\_\_(날짜)에 “미국장로교회 성적비행 정책과 절차” 문서를 받았으며, 이날 정책을 읽고, 그 뜻을 이해하며, 그리고 정책에 따라 나의 행동을 함께 하기로 동의 한다.

사인 Signature \_\_\_\_\_

정책이 개정되어 분포될 시 비슷한 확인영수의 사인과정이 있어야 한다.

샘플 증거서류 Sample Exhibit D

본 증거서류는 성적비행 의혹신고 샘플양식이다. 여기에는 피해자, 가해자, 가능한 증인, 그리고 다른 관련된 자들의 이름,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를 기입한다. 또한 다른 적절한 정보와 함께 가해자의 행동묘사를 기입한다. 이 양식 혹은 보완된 양식은 권한 구성 혹은 답변 조정 팀에게 신고파일을 전할 책임이 있는 적당한 감독관, 사무처, 혹은 기관의 행정담당자에게 전달된다. (본 정책과 절차의 신고 이후 섹션을 보라.)

성적비행 의혹신고 Report of Suspected Sexual Misconduct

Reported by: \_\_\_\_\_

Name \_\_\_\_\_

Title \_\_\_\_\_

Address \_\_\_\_\_

City, State, and Zip Code \_\_\_\_\_

Telephone \_\_\_\_\_

Date of Report: \_\_\_\_\_

Person suspected of misconduct:

Name \_\_\_\_\_

Title \_\_\_\_\_

Address \_\_\_\_\_

City, State, and Zip Code \_\_\_\_\_

Telephone \_\_\_\_\_

Other person(s) involved (witness or victims):

Name \_\_\_\_\_ Title \_\_\_\_\_

Age \_\_\_\_\_ Sex \_\_\_\_\_

Address \_\_\_\_\_

City, State, and Zip Code \_\_\_\_\_

Telephone \_\_\_\_\_

성추행 의혹신고 Report of Suspected Sexual Misconduct

성적비행 의혹사건에 대하여 날짜, 시간, 장소를 포함하여 기술하라.

---

---

사건 증인의 이름,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및 유효한 시간을 기입하라:

---

---

## 샘플 증거서류 Sample Exhibit E

### 고용 지원자에게 묻는 채용 설문

치리회와 기관들은 사역의 부름 혹은 안수직이 아닌 고용직을 찾는 자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1. 당신은 성적비행과 관련되어 사법, 형법, 혹은 교회법으로 고소 당한 적이 있는가?
2. 당신은 성적비행의 피소인의 의혹으로 포지션에서 사임하거나 제명당한 일이 있는가?
3. 만약 그렇다면, 의혹에 대한 날짜, 사건, 그리고 장소와 함께 그 때 당시의 고용주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하십시오.
4. 당신은 성적비행과 관련되어 전문적인 상담, 신체적 혹은 심리적 치료를 받도록 요구된 적이 있는가?
5. 만약 그렇다면 치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치료 의사 혹은 전문인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하십시오.

여기에 대한 치리회 및 기관의 샘플설문으로 증거서류A가 있다. 본 샘플의 질문들은 다른 필요한 추가질문들을 포함하여 고용설문지의 내용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부록 Appendix C

### 관련자 모두의 요구충족 Meeting the Needs of All Involved

성적비행 사건에는 모든 사람들, 그룹, 그리고 기관의 선을 위하여 충족하여야 할 요구사항들이 있다. 치리회가 현존하는 여러 가지의 요구사항들을 충족할 준비를 위하여 독립적인 대응조정팀(Response Coordinating Team)을 명명할 수 있다. 이 팀은 의혹을 조사하는 혹은 교인이나 임원을 징계하는 조사위원회의 기능이 아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그 가족(만약 존재한다면), 가해자와 그 가족(만약 존재한다면), 고용 기관, 회중, 그리고 치리회의 구체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과정을 조정하도록 그 역할을 한정하여야 한다.

#### A. 피해자의 요구사항 *The Needs of the Victim*

치리회, 고용기관, 그리고 대응조정팀은 주장되는 성적비행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충분한 치료와 돌봄이 제공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어떤 때는 피해자 혹은 가족이 몹시 화를 내고 교회로부터 소외되어 있어서 도움의 손길이 오히려 진실성이 없거나 사건을 덮어버리려는 시도로 여길 수도 있다. 만약 피해자나 가족이 초기에 거부반응을 보이더라도 교회는 계속하여 도움을 제공한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의도로 피해자와 그 가족을 무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적비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여기에는 학대가 가져온 심각정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 그리고 감정적 상태, 인간 다이내믹, 그리고 한 개인의 종교적 신앙의 중요성 등의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게 한다. 치리회, 기관, 그리고 대응조정팀은 모든 케이스에서 피해자가 경험으로 인하여 상처를 입고 있음을 가정하여야 한다.

죄, 수치, 화, 불신, 낮은 자아, 무가치, 그리고 하나님, 자신, 종교 공동체,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소외된 느낌 등은 피해자가 자주 고통스러워하는 상처들이다. 그러므로 대응조정팀은 피해자의 아픔과 치유를 위한 필요에 민감하여야 하고 적절한 목회적 돌봄을 제공하여야 한다.

피해자를 위한 필요사항들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말을 진지하게 귀담아 듣는다. 피해자가 성적비행 사건이 일어난 것을 처음 암시할 수 있었던 순간부터 모든 교회 대표들은 그에게 즉각적인 주목을 하여야 하고 진지한 고려대상이 되어야 한다.
2. 목회와 치유적 후원을 받는다. 피해자는 성적비행으로 인하여 영적 그리고 전문적 지원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 만약 피해자가 원한다면, 대응조정팀은 이러한 지원을 받도록

목사와 상담자를 연결하여 준다. 이러한 전문가들과의 대화는 비밀유지 및 특권을 부여하는 일이다.

3. 신고한 후 교회에서의 처리과정 및 상황정보를 알린다. 대응조정팀의 한 사람은 피해자를 위하여 교회와 접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접촉하는 사람은 자주 피해자에게 신고 이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보를 알려주어야 한다.

4.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대응조정팀은 피해자에게 독립적 법률 자문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권하여야 한다. (본격적인 고소는 더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약하거나 그릇된 고소는 취소하게 된다.) 만약 요구되면, 대응조정팀은 독립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다.

5. 본인 스스로 선정한 대변자에 대한 확신. 피해자는 신고 이후 교회가 과정을 처리하는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지속적인 도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 지원자는 친척, 친구, 혹은 대응조정팀이 원하는 사람일 수 있다. 이 지원자는 필요에 따라 피해자를 대신하여 말할 수 있다.

- 정의가 실현됨의 확신. 대응조정팀은 피해자에게 교회의 과정에서 사실 찾기, 진실 말하기, 직면, 그리고 피소자의 관계해소 혹은 임시 직무정지 혹은 고소 판결을 포함한 협정을 통하여 정의가 실현됨을 확신시켜야 한다.
- 치유와 화해를 받다. 위에서 언급한 구체적인 복위(restitution)의 양식에 더 하여 피해자는 자신, 가족, 교회, 그리고 이상적으로 가해자를 포함한 모든 관계된 자들과의 치유와 회복의 감각을 느껴야 할 필요가 있다. 대응조정팀은 교회의 과정과 자료들을 사용하여 이러한 일을 이룰 수 있다. 위의 사항이 피해자의 요구사항이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모든 요구사항들이 구체적인 케이스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통하여 이루어 짐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필요사항들은 진지하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피해자의 권익을 존중하며 지켜져야 한다.

#### B. 피소인의 요구사항 *The Needs of the Accused*

치리회 혹은 기관은 주장된 피해자와 가족을 포함하여 피소인에게도 치유와 돌봄을 제공하여야 한다. 만약 피소인이 목사라면, 이 사항은 노회 목회위원회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규례서*, G-3.0307).

죄, 수치, 화, 불신, 낮은 자아, 무가치, 그리고 하나님, 자신, 종교 공동체,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소외된 느낌 등은 피소인이 자주 경험하는 일이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직장을



않는 두려움, 감금, 그리고 만약 진술이 거짓일 때의 분노 등이 있을 수 있다.

성적비행 주장이 무죄로 확인될 때 치리회 및 기관은 피소된 당사자가 더 큰 상처를 입지 않는다면 결정된 일이 가능한 사방에 알려지도록 한다.

#### 1. 개인적 돌봄 *Personal Care*

피소자의 기소가 사실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피소자는 기독교적 친절과 존경을 받아 마땅하다.

대응조정팀은 피소자에게 영적 도움 혹은 전문상담을 추천할 수 있다. 노회 총무 혹은 노회 서기와 같은 노회직원들은 피소자에게 개인적인 상담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권징과정에 관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2. 피소자 가족의 재정적 보증 및 돌봄 *Economic Security and Care for Family of Accused*

성적비행 신고가 목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을 때 피소자의 재정적 보증과 함께 명성, 직업, 그리고 가족관계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거듭 말하여 목회위원회가 지원할 수 있다.

대응조정팀은 피소자의 가족에게 필요할 수 있는 영적, 감성적, 그리고 재정적 도움과 전문적 지원을 목회위원회에 기민하게 알릴 수 있다.

### C. 성적비행시 회중의 필요사항 *The Needs of a Congregation in a Context of Sexual Misconduct*

치리회, 고용기관, 그리고 대응조정팀은 회중 혹은 치리기관은 목사, 고용인, 혹은 자원봉사자의 성적비행에 대한 진술로 겪은 경험들이 가져오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 진술은 회중 혹은 조직을 갈라놓고 사기를 저하시키며, 중대한 내부 문제들을 만들고, 또한 후임목사를 믿고 따라야 할 회중의 신임을 제한시킨다. 문제를 인지하고 파악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회중 혹은 조직이 입은 피해를 치유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지역교회의 목사, 안수 받지 않은 직원, 혹은 자원봉사자가 저지른 성적비행이 사실이라면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회중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그 회중에게 독특한 요구사항들이 생겨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요구들이 각 상황에 같은 순서로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성적비행에 관련된 사람들에 따라서 어떤 요구들은 생기지도 않을 수 있다. 모든 경우에 성적비행에 대응하는 교회들은 다음과 같은 요구들이 생겨날 수 있음을 알기 원할 것이다:

#### 1. 목회적 돌봄 *Pastoral Care*

회중의 교인과 직원들에게 목회적 돌봄이 필요하다. 만약 목사가 성적비행에 관련되었다면,

(만약 교회가 여러 직원을 두고 있다면) 돌봄은 다른 안수 목사 직원이 제공하거나 혹은 훈련된 인테림 목사가 한다. 만약 성적비행으로 인하여 목사가 교회를 떠난다면 가장 심한 경우에는 회중을 위하여 훈련된 인테림 목사 혹은 성적비행 컨설턴트가 장기적인 시간 동안 일할 수도 있다.

만약 목사가 성적비행에 관련되어 있지 않다면 회중을 돌보는 일을 목사가 제공할 것이다. 만약 목사가 이 전문적인 일에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앞으로 일어날 문제들을 어떻게 대비할지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는 교단의 전문가에게 이 일을 의뢰함이 필요하다.

## 2. 사건의 정보 *Information About the Case*

교회 교인들은 정보를 주고 또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만약 성적비행 사건이 회중들에게 공공지식으로 알려지고 또한 목사의 성적비행 죄가 밝혀진다면 인테림 목사 혹은 컨설턴트는 관련자들, 소 그룹, 혹은 회중전체와의 적절한 미팅을 주선한다. 이러한 모임들은 성적비행과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 장로교 헌법과 재판과정,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발생한 희생자들의 목소리 듣기와 그들에 대한 돌봄을 나눌 수 있다. 만약 가해자가 목사가 아니라면, 이러한 기능을 목사가 할 수 있다. 이 미팅에서 교인들이 그들의 감정을 분출함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만약 분출함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미래의 회중, 신임목사, 그리고 치리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소수인종 교회에서의 다이내믹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떤 경험적인 연구에서도 다른 역학을 아직 찾지는 못하였다.

## 3. 인적자원 *Resource Persons*

성적비행의 상황에서 위의 필요사항에 대하여 회중에게 귀중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적자원들은 다음과 같다: 훈련된 인테림 목사, 목회위원회 대표로서 교회내의 성적비행의 영향력과 교회법에 해박한 자, 케이스의 법적 자문을 하여줄 변호사, 회중에게 보험에 관련된 책임 및 보호를 안내할 수 있는 보험 에이전트 등이다.

각 관할권마다 성적비행에 대한 정책과 절차를 정하여 세움은 속한 치리회의 책임이다. 본 미국장로교 정책과 절차는 치리회의 정책과 절차를 정하기 위한 안내를 하기 위하여 예정되었다.